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사대상 인권침해 범위 확대〉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86호)

2026.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신장식 · 서왕진 · 이해민 · 정춘생 · 김선민 · 황운하
강경숙 · 조인철 · 고민정 · 백선희 · 차규근 의원
(11인)

2. 제 안 일 : 2026. 2. 19.

3. 회 부 일 : 2026. 2. 20.

※ 의안번호 : 1688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진정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조사 대상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평등권과 자유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사회적 기본권 침해에 따른 인권 구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자유권 침해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진정할 수밖에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기본권(사회적 기본권)을 위원회의 조사 대상인 인권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인권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인권침해의 범위를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에 대한 침해에서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에 대한 침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 ----- ----- -----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1. ----- ----- ----- ----- ----- ----- ----- ----- ----- ----- --제22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¹⁾는 ‘인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30조제1항제1호²⁾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을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의 침해로 규정하고 있음.

즉, 현행법에 따라 인정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36조까지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권) 중에서 자유권적 기본권(포괄적 기본권 포함, 재산권 제외)만 해당하고,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및 사회적 기본권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표-2] 헌법상 기본권의 내용상 분류(제10조부터 제36조까지)

구 분	헌법상 기본권
포괄적 기본권	○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제11조: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 제12조·제13조: 신체의 자유권 ○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 제16조: 주거의 자유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급·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구 분	헌법상 기본권
	○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제18조: 통신의 자유 ○ 제19조: 양심의 자유 ○ 제20조: 종교의 자유 ○ 제21조: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 제23조: 재산권의 보장
정치적 기본권 (참정권)	○ 제24조: 선거권 ○ 제25조: 공무담임권
청구권적 기본권	○ 제26조: 청원권 ○ 제27조: 재판청구권 ○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 제30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사회적 기본권	○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 제32조: 근로의 권리 ○ 제33조: 노동3권 ○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제35조: 환경권 ○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모성보호 및 보건권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17년 10월 「사회권 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업무를 헌법 제 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본질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그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³⁾

또한, 사회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 여전히 미흡한 현실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복잡한 소송 절차나 비

3) 「사회권위원회 제04차 최종견해」, 2017, p.4

용 부담 없이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권 침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⁴⁾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인권침해의 범위를 사회적 기본권까지 확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기본권의 침해에 대하여 조사·구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인권 보장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2001. 5. 24. 제정, 2001. 11. 25. 시행) 당시부터 자유권적 기본권에 한정되었는데, 조사대상 범위는 제정 당시 입법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 중 하나였음.

당시 조사대상을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33조 또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정한 인권’으로 하는 의원발의법률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 전반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법원, 검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여성부, 노동위원회, 감사원 등 기존의 국가기관과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⁵⁾되었고, 결국 조사대상을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으로 하는 제정안⁶⁾

4) 이주영, 「사회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방향 토론」, 사회권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방향 간담회 토론자료, 2026, p.47

5)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법안 검토보고(이미경의원 대표발의)」, 2001, p.13

6) 정대철의원 대표발의안 및 이인기의원 대표발의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

이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제정 이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범위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한정·유지되어 온 연혁적 의의와 제정 당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사회적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기구를 통한 비사법적 구제절차인 진정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로는 멕시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공화국, 필리핀, 나이지리아가 있음.⁷⁾

둘째, 헌법재판소는 사회권의 보호영역을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개인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서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⁸⁾

‘사회적 기본권(헌법 제31조 내지 제36조)이 국가에게 그의 이행을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다른 과제보다도 사회적 기본권이 규정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우위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예산책정과정에서 반드시 우선적 이행을 요구할 수가 없다.……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에 의하여 제시된 국가의 의무

7)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에 대한 개인구제절차 강화 방안 연구-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 및 인권위 조사대상 확대를 중심으로-」, 2023, pp.151~163

8)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결정

와 과제를 언제나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경제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와 우선순위결정을 통하여 이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목표의 무조건적인 최우선적 배려가 아니라 단지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이 담고 있는 국가목표를 고려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음.⁹⁾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적 기본권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침해행위 조사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조사를 통하여 실제적인 구제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셋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인권침해의 범위를 헌법상 기본권 전체로 확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¹⁰⁾

문 의 처
02)6788-5017

9)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결정

10) 조사대상 인권침해 범위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연 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162	김예지의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인권침해 범위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대